

1. 개정이유

규칙 제4조는 법률구조법인 관리·감독을 위한 원칙적 차원의 규제로서 추가적인 규제완화 여지가 미미하여 일몰해제가 타당하다는 규제심사위원회의 개선권고 취지에 따라,
규칙 제9조제2호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일몰해제 및 주기적 재검토 부담을 줄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주기적 재검토 조항 삭제(안 제9조제2호)

규칙 제4조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일몰해제 및 주기적 재검토 부담을 줄이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11. 17. ~ 12. 28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법무부령 제 호

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규제의 재검토) 법무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 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 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9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의 변경등록 신청 절차: 2015 년 1월 1일	<삭 제>